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89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김도읍 · 김형동 · 조배숙
김은혜 · 박충권 · 이현승
이진숙 · 이종욱 · 구자근
이성권 · 강대식 · 권영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3조의3 및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행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우정사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대책
3.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
4.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훈련·감사 등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 시 탐지·대응·복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을 취급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정보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통제와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수탁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우정사업총괄기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 분석·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에”를 “제3조의3제1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행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u> <u>2. 우정사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대책</u> <u>3.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u>

4.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수준에 대한 평
가·훈련·감사 등 분실·도
난·유출 등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
밀의 분실·도난·유출 등 사
고 시 탐지·대응·복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
밀을 취급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정보시스템 등의 접근 권
한 관리·통제와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
밀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위
탁하는 경우 수탁자(수탁자로
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
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개
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교
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
여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우정사업총괄기관(「우정사
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u>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⑦ <u>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생략)	제3조의3(우편물의 운송 명령)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생략)	제3조의4(우편물의 우선 취급) (현행 제3조의3과 같음)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 ----- ----- -----.
1. <u>제3조의2제1항에</u> 따른 우편 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 한 자	1. <u>제3조의3제1항에</u>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